

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6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‘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최종 수용 개선과제’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개선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 수정
- 청소년수련관 사용료(시설대관료)의 모호한 산정기준 변경 및 누락 사항(공유주방) 등 반영
- 청소년수련시설과 수련시설 상주기관의 운영시간이 상이하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,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변경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산정 및 반환기준 변경
- 1) 보통 대관은 9~13시, 12~18시 등으로 진행하나, 현재 대관료 산정 규정상 12~13시, 17~18시 공백시간이 존재하여 산정기준이 모호함.
 - 2) 모호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시설에서 공백시간에 대한 대관료를 임의 산정하여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, 대관료 산정기준을 시간 단위(1시간 기준)로 재설정하고자 함.
 - 3) 또한, 규정상 존재하나 대관실적이 없는 강의실 규정 삭제, 규정상 없으나 대관 진행 중인 ‘공유주방’에 대한 대관료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.
 - 4) 아울러, ‘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’가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선정됨에 따라, 이용료 반환기준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시설 이용자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선안’에 따르고자 함.

나.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 규정 변경

- 1) 현재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감일공공복합청사에 상주하여 운영 중으로, 해당 청사 상주 시설 중 주말 운영 시설은 감일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뿐임.
- 2) 주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상시 근무자는 1명으로, 4개 층 6,688㎡ 규모의 청사를 1명이 책임지기에 청사 보안 및 안전 문제에 취약함.
- 3)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월요일 휴관 시 보안 문제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며,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.
- 4)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을 ‘매주 월요일’에서 ‘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’로 변경하고자 함.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5. 8. 19.~2025. 9. 9.(21일간)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

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이용료의 전부”를 “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이용 개시 5일 전까지 신청”을 “신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호 중 “월요일”을 “월요일 또는 일요일”로 한다.

별표 2,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청년일자리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
	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지원팀장 김유정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신민정 (031-790-5405)

[별표 2]

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료(제17조 관련)

1. 시설대관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	기준	사 용 료		비 고
		청소년 이하	성 인	
다목적홀	1시간 (기준시간: 9~21시)	10,000	20,000	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% 가산 (휴일 대관 09:00~20:00)
	1일(09:00~21:00)	100,000	200,000	
체육관	주간(09:00~18:00)/1시간	무료	25,000	
	야간(18:00~21:00)/1시간	무료	50,000	
부대시설	조 명	1회(4시간)	35,000	
		추가(시간당)	10,000	
	음 향	1회(4시간)	15,000	
		추가(시간당)	10,000	
	마이크(무선)	개당	10,000	기본(2개) 무료
	마이크(유선)	개당	2,000	
빔프로젝트	1회(4시간)	10,000		
냉난방	1시간당	20,000		

- 청소년 이하는 다목적홀, 체육관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이용료 무료
- 수련관 자체 행사 및 활동, 강좌 시간 외 대관 가능
- 수련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%를 가산
- 기준시간 이내 이용할 경우 기준이용료를 적용한다.
- 휴일은 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을 말한다.

2. 자유시설 이용료 및 교육수강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준	이용(수강)료		비 고
		청소년 이하	성인	
자유시설이용	1인/1시간	무료	2,000	체육관
	1인/2시간	무료	5,000	공유주방
문화·교육 등 프로그램	1인/1과목/월	10,000	20,000	강좌
특강	1인/1과목/회	5,000	10,000	단회기성

※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

[별표 3]

이용료 반환기준(제19조 관련)

사유 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 (반환신청일)	반환기준	비고
제19조제1항제1호		이용개시 전일까지	전액	
		이용개시일 이후	일할계산	
제1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	시설대관료	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중 ‘체육시설업, 레저 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’ 해결기준을 따름		
	자유시설이용료 및 교육수강료	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중 ‘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’ 해결기준을 따름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이용료 등의 반환) 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이용료의 전부를 반환</u>해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수련시설 이용 신청자가 <u>이용 개시 5일 전까지 신청</u> 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</p>	<p>제19조(이용료 등의 반환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</u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신청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0조(휴관)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매주 <u>월요일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0조(휴관) ----- -----.</p> <p>1. --- <u>월요일 또는 일요일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